제2020-4회 교무위원회
2020. 4. 6.(월)

경남도립거창대학

교무위원회 심의자료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교무위원회 심의 목록

※ 총 3건
- 시행세칙안 : 0건
- 규 정 안 : 3건
- 기 타 : 0건

2020. 4. 6.(월)

순번	의안 번호	제출부서	건 명	페이지
1	2020-13	교무처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원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2	2020-14	교무처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
3	2020-15	교무처	경남도립거창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

의안번호	제 2020 - 13호
의결(보고) 년 월 일	2020. 4. 6.

심의의결사항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원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출 자	교무처장 강호근
제출 연월일	2020. 4. 6.

교무위원회 심의 전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원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제안이유

❍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2019.2.26., 시행 2019.5.27.)에 따른 교원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2. 주요내용

❍ 제5장 징계위원회 제44조(구성) 제2항 일부개정

- '총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로 한다

❍ 제44조(구성) 제3항 신설

-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 호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원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원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징계위원회) 제4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구성)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구성)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징계위원회	제5장 징계위원회
제4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4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우리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 1.~4.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안번호	제 2020 - 14호
의결(보고) 년 월 일	2020. 4. 6.

심의의결사항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출 자	교무처장 강호근
제출 연월일	2020. 4. 6.

교무위원회 심의 전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제안이유

○ 학사경고자(고위험군)에 대하여 자기주도학습 동기부여 및 학업 적응력을 높여 성적향상을 통해 중도탈락 방지 및 충원율을 제고하는 등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대비하여 장학생 선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진단 항목 및 지표(붙임 '참고자료' 참조)

항목 : 4.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지표 : 4.3.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진단요소 : 4.3.3. 학사경고 부여 기준 수립 및 준수 노력

*근거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교육부, 교등교육과-2988, '20.2.12.)

2. 주요내용

○ "별표1"의 성적장학 중 "성적향상장학"의 수혜요건에 학사경고자의 성적향상에 대한 단서 추가

- 단, 당해학기 학사경고자 1.5미만에 한하여 학사경고 점수대비 2.0이상 향상자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 호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8항 및 제16조 제1항 '별표1'의 성적장학 중 '성적향상장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제12조, 제16조 관련)'

장학금의 종류		수혜대상	수혜(자격) 요건	지급액(1인)
성적장학	성적향상장학	성적향상자	평균평점 3.0이상인자로 직전학기 대비 1.0이상 향상자 단, 당해학기 학사경고자 1.5미만에 한하여 학사경고 점수대비 2.0이상 향상자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 수정가결

'단, 학사경고자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기준 1.0이상 향상자'로 수정함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1]

장학금의 종류			수혜대상	수혜(자격)요건	지급액(1인)
성적장학	입학성적우수장학	1종	제체수석	입학성적 전체수석 재학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3.5미만일 경우 지급 중단	수업료 전액 전액(재학기간까지)
		2종	학과수석	입시전형 학과수석	수업료 이하의 금액
			학과차석	입시전형 학과차석	수업료 7할 이하의 금액
			학과삼석	입시전형 학과삼석	수업료 5할 이하의 금액
			성적우등	입시전형 학과 4위	수업료 4할 이하의 금액
			성적우등	입시전형별성적이 상위 50%이내인자로 학과장 추천자	수업료 4할 이하의 금액
			성적우등	〃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재학성적우수장학	A	학과수석	품행이 방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과수석	수업료 이하의 금액
		B	학과차석	품행이 방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과차석	수업료 7할 이하의 금액
		C	학과삼석	품행이 방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과삼석	수업료 5할 이하의 금액
	재학성적우등장학		재학성적상위자	본 규정제9조⑤항	수업료 4할 이하의 금액
	성적향상장학		성적향상자	평균평점 3.00이상인자로 직전학기 대비 1.00이상 향상자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공로장학 (생략)

생활비지원장학 (생략)

개정안

[별표 1]

장학금의 종류			수혜대상	수혜(자격)요건	지급액(1인)
성적장학	입학성적우수장학	1종	제체수석	입학성적 전체수석 재학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3.5미만일 경우 지급 중단	수업료 전액 전액(재학기간까지)
		2종	학과수석	입시전형 학과수석	수업료 이하의 금액
			학과차석	입시전형 학과차석	수업료 7할 이하의 금액
			학과삼석	입시전형 학과삼석	수업료 5할 이하의 금액
			성적우등	입시전형 학과 4위	수업료 4할 이하의 금액
			성적우등	입시전형별성적이 상위 50%이내인자로 학과장 추천자	수업료 4할 이하의 금액
			성적우등	〃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재학성적우수장학	A	학과수석	품행이 방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과수석	수업료 이하의 금액
		B	학과차석	품행이 방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과차석	수업료 7할 이하의 금액
		C	학과삼석	품행이 방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과삼석	수업료 5할 이하의 금액
	재학성적우등장학		재학성적상위자	본 규정제9조⑤항	수업료 4할 이하의 금액
	성적향상장학		성적향상자	평균평점 3.00이상인자로 직전학기 대비 1.00이상 향상자 단, 당해학기 학사경고자 1.5미만에 한하여 학사경고 점수대비 2.00이상 향상자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수정가결
'단, 학사경고자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기준 1.0 이상 향상자'

공로장학 (생략)

생활비지원장학 (생략)

의안번호	제 2020 - 15호
의결(보고) 년 월 일	2020. 4. 6.

심의의결사항

경남도립거창대학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출 자	사무국장 정연보
제출 연월일	2020. 4. 6.

교무위원회 심의 전

경남도립거창대학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제안이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2 제3항 개정(신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부재(출장, 연가 등)시 대리자 지정 필요

※ 대리자 미지정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 2020년 상반기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준비

2. 주요내용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 가능(대리기간은 30일 초과 불가)

- 여행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대리자 지정요건

- 안전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작성(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 호

경남도립거창대학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경남도립거창대학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참고자료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교육부, 교등교육과-2988, '20.2.12.)

항목: 4.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지표: 4.3.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배점 : 9

☐ 진단 방향

-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수업 규난리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생 평가를 위한 관리가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진단

☐ 진단 요소

-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2점, 정성)

☐ 진단의 주안점

- 합리적인 성적 부여(재수강 포함) 기준, 학사경고 부여 기준 관련 제도의 구체성과 체계성
- 합리적인 성적 부여(재수강 포함) 기준, 학사경고 부여 관련 제도의 실행 및 후속 조치 노력

☐ 진단 자료

구 분	자 료	공시(해당) 연도	출 처	자료 기준일
전 체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관련 자료	2018년 2019년 2020년	대학별 제출 자료	2018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 평정 척도: 진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기준	A	B	C	D	E
점수	2점	1.6점	1.2점	0.8점	0.4점

☐ 작성 방법

- 진단 요소 :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기술 4-3-4] 학사경고 부여 기준 수립 및 준수 노력

☐ **학사경고 관리 체계의 운영 현황과 성과**
- 학사경고 관리 체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학사경고 관리 체계의 실행 내용 및 절차
- 학사경고 관리 체계에 따른 후속 조치 노력

[증빙자료]
(1) 학사경고 부여 기준 수립 및 준수 관련 규정 또는 지침
(2) 학사경고 관리 체계의 실행 및 후속 조치 노력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